

<2006년 제1회 전북여성정책포럼>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추진방향

- 일 시 : 2006년 2월 28일(화) 14:00-16:00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목 차 □

- <발표 1>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가족기능 강화방안(조 경 옥) 1
- <발표 2>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수립방향(이 성 희) 27
- <토론 1> (이 혜 숙 :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47
- <토론 2> (김 미 숙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드림 팀장) 49
- <토론 3> (홍 달아기 :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전공 교수) ... 51
- <토론 4> (고 희 숙 : 군산 성폭력상담실) 55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가족기능강화 방안

조 경 옥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팀장)

I. 들어가며

본고는 전라북도 가족실태 및 문제점 등을 통하여 향후 지역적 차원에서의 가족 정책 개발 및 수립,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2005년도에 본 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연구결과 가운데 중앙의 가족정책의 주요 핵심사항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노동, 직장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등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및 맞벌이 부부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가족과 여성에 의해 수행해 왔던 역할과 기능의 축소, 확대, 혹은 사회기관으로의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가족정책수립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전라북도 가족변화의 추이 및 특성

근대화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1세대 가구의 증가와 3세대 가구의 감소, 직계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비혼 및 이혼, 재혼이 늘어났으며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변화하였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전국의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지역적인 특성에 기초한 변화를 볼 수 있는 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구조의 변화

1) 확대가족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

전라북도 가족의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는 아래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가장 뚜렷한 변화는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의 현저한 감소와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설명할 수가 있다.

<표 1>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전라북도	2000년		1995년		1990년		1985년		198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총 가구수	601,965	100.0	556,985	100.0	517,181	100.0	489,567	100.0	451,763	100.0
1세대가구	110,318	18.3	89,896	16.1	60,554	11.7	43,081	8.8	29,605	6.6
2세대가구	326,249	54.2	318,964	57.3	323,091	62.5	316,999	64.8	303,177	67.1
3세대가구	53,177	8.8	61,173	11.0	79,803	15.4	89,461	18.3	93,453	20.7
4세대이상가구	1,184	0.2	1,448	0.3	2,123	0.4	2,716	0.6	2,956	0.7
1인가구	104,780	17.4	78,676	14.1	44,712	8.6	30,806	6.3	18,221	4.0
비혈연가구	6,257	1.0	7,098	1.3	6,898	1.3	6,504	1.3	4,351	1.0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서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젊은 연령층이 취업과 교육 및 결혼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와 노인1인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2) 가족형태별 가구구성 변화

전국의 가구구성에 비해 전북의 경우를 보면 부부와 자녀가 사는 가구가 41.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부가구 16.8% 편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6%의 순이다. 가구구성비의 변동을 보면, 1995년에 비해 핵가족은 2.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계가족도 1.3%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북지역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전국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표 2>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체가구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핵가족	부부	7.8	7.2	9.3	9.2	12.6	14.7	14.8	16.8
	부부, 자녀	57.8	50.5	58.0	47.3	58.6	43.8	57.8	41.1
	편부모, 자녀	9.7	9.8	8.7	8.4	8.6	7.6	9.4	7.6
직계가족	부부, 양친	0.8	0.2	0.9	0.2	1.1	0.2	1.1	0.2
	부부, 자녀, 양친	9.9	2.5	9.4	2.2	8.0	1.5	6.8	1.2
기타가족	14.0	29.8	13.8	32.7	11.2	32.2	10.1	33.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전북지역 이혼의 경우는 1997년의 3,270건에서 2003년 6,295건으로 불과 6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3년 조이혼율도 3.2로 전국 평균 3.5보다는 낮은 편이나 1997년에 비해 두 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북지역도 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000년까지는 전북지역은 이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해왔으나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3> 이혼율의 변화(전북, 1997-2003)

단위: %

년도	혼인수	이혼수	이혼율	조이혼율
1997	14,337	3,270	22.8	1.6
1998	13,306	4,145	31.2	2.1
1999	13,183	4,239	32.2	2.1
2000	11,362	4,200	37.0	2.1
2001	10,281	4,550	44.3	2.3
2002	10,687	5,179	48.5	2.6
2003	10,246	6,295	61.4	3.2

주: *이혼율은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것임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의 이혼건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1997-2003)』, 전북여성통계연감, 2003

4) 출산율의 저하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97년에는 1.64의 수준이었으나, 2003년의 경우 1.26명으로 떨어져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되었다. 이러한 합계 출산력의 감소 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 부인의 출산력 감소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전북지역 합계출산율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출산율	1.64	1.61	1.52	1.58	1.41	1.26	1.26

2. 가족형태의 다양화

1) 한 부모 가족

<표 5> 세대별 가구 구성의 변화

전 라 북 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체 가구수	451,763	489,567	517,181	556,985	601,965
편부모, 자녀	46,269 (10.2)	47,765 (9.8)	43,701 (8.4)	42,178 (7.6)	45,746 (7.6)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 부모 가족은 사별, 미혼모, 이혼, 그리고 유기·가출·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인한 배우자와의 비동거에 의해 발생한다. 한 부모+미혼자녀의 가구구성은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1980년 보다 2000년의 경우 조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별 이외에 이혼에 의한 한 부모 가족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 1인가구

1인가구는 1980년 4.0% 포인트에서 2000년 17.4% 포인트로 매우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취업, 학업 등으로 인한 1인가구의 형성, 미혼독신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표 6> 단독가구 수

전 라 북 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가구수	451,763	489,567	517,181	556,985	601,965
단독가구(1인가구)	18,221 (4.0)	30,806 (6.3)	44,712 (8.6)	78,676 (14.1)	104,780 (17.4)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3)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

한 부모 가족 중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세대는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이 남성에게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이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가구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및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족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의 하나이다. 모자세대와 소년소녀가장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북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단위 : 세대, %

구	분	모 자 세 대 계	소년소녀 가장세대 계
	계	1,994(100.0)	1,152(100.0)
1997	거택보호	552(27.7)	846(73.4)
	자활보호	1,442(72.3)	306(26.6)
	계	5,293(100.0)	1,649(100.0)
1998	거택보호	1,511(28.5)	1,370(83.1)
	자활보호	3,782(71.5)	279(16.9)
	계	1,682(100.0)	904(100.0)
1999	거택보호	489(29.1)	778(86.1)
	자활보호	1,193(70.9)	126(13.9)

자료 : 전북여성통계연보 2000.

4) 국제결혼 가족

한국사회의 국제화·지구화 추세와 맞물려 최근 국제결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35,777건으로서 2003년 25,658건보다 38.2%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한국사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2003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 304,932건에서 8.4%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의 경우 310,944건 가운데 11.4%까지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 박재규, 2005에서 재인용).

최근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파악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료에 의하면 약 1,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전라북도 자료, 2005).

전북의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전북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촌지역 미혼남성의 경우,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외국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당분간 확대될 것이며, 더욱이 농촌지역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농촌지역 정주 및 인구발전을 위한 동력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중요성이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재규, 2005).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가족형성의 또 다른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이나 적응과정에서의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III. 가족기능상의 변화와 문제점: 전라북도 가족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 돌봄노동의 실태: 자녀양육과 요보호가족원 보살핌을 중심으로

최근의 노동시장과 가족 변화 속에서 돌봄노동이 수행되던 관계와 구조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증가, 여성노동력의 증가, 핵가족화, 이인소득자 가족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가족의 돌봄제공 자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소위 "돌봄 결핍(care deficit)", "돌봄위기(care crisis)"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노동은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돌봄노동의 책임과 역할의 분배, 수행과정, 돌봄노동의 제공과 욕구에서 현격한 성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에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책임은 여성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사회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은 여성의 경제적 빈곤화를 양산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자녀양육과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원을 둘러싼 돌봄노동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자녀양육

전통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는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자녀보호의 몫도 사회로 이전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가족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에서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없게 되었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부담은 가족에게는 저출산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아동의 측면에서는 아동의 방기로 인한 아동 행복권의 포기를,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불평등한 가족 및 사회생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 및 초등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문제 특히, 자녀를 어디서 보호할 것인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보여 진다. 본 글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실태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1) 자녀가 주로 다니는 곳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547명을 대상으로 가장 어린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를 묻은 결과,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다(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25.2%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는 것은 학원, 과외, 학교 등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이 주로 다니는 곳을 알아보면 20대 응답자의 자녀들은 특별히 다니는 곳이 없는데 응답한 비율이 61.4%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28.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학원이나 과외, 학교 등에 다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본 가운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둔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원에서 보호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돌봄에 있어 가족 및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족과 초등아동의 방과 후 대책이 유일하게 학원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모의 취업여부¹⁾에 따른 자녀보호를 살펴보면, 모가 취업한 가족은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족에 비해 자녀를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등의 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높은 반면 모가 취업한 가족에서 자녀를 아무 곳에도 보내지 않는다는 경우(18.9%)는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3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가 취업한 가족은 자녀에 대한 보호를 시설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여성의 경우는 직장과 자녀보호의 양립으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더 나아가 기혼여성의 취업단절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표 8> 가장 어린 자녀가 주로 다니는 곳

단위 : %

특성	특별히 가는 곳 없음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과외, 기타	계(명)
전체	25.2	11.9	16.3	2.2	44.4	100.0(547)
연령						
20대	61.4	.0	28.1	.0	10.5	100.0(57)
30대	23.5	17.4	20.3	1.6	37.1	100.0(310)
40대	17.2	5.9	5.9	4.1	66.9	100.0(169)
50대	9.1	9.1	.0	.0	81.8	100.0(11)
모의 취업여부						
취업함	18.9	13.5	14.6	0.7	47.7	100.0(445)
취업안함	31.4	12.7	11.4	0.3	44.2	100.0(102)

(2)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

영유아 및 초등아동이 유치원이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가장 어린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사람은 응답자 547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5.5%와 27.6%이다. 따라서 응답자의 2/3정도는 부부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 비율은 두 번째 어린 자녀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 본 조사에서 취업여성은 직종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취업상태로 보고자 하였다.

부모 이외에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조부모에 의해 돌봐지는 경우로 가장 어린 자녀에서는 13.5%, 두 번째로 어린자녀에 대해서는 9.4%가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그동안 자녀보호의 큰 몫을 담당해왔던 조부모의 인력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어 조부모의 세대가 더 이상 자녀보호의 대체 인력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베이비시터나 파출부와 같은 유급보조자에 의해 돌봐지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5.7%나 되어 자녀보호에 대한 방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양육은 아직까지는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부부와 조부모에 의한 의존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표 9> 가정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 명

구분	가장 어린 자녀		두 번째 어린 자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내	194	35.5	124	36.5
남편	151	27.6	104	30.6
친정 및 시부모	74	13.5	32	9.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2	2.1	4	1.2
자녀의 형제자매	17	3.1	9	2.6
파출부/가정부	1	0.2	0	.0
베이비 시터	1	0.2	1	0.3
이웃집(유료)	5	0.9	1	0.3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 없음	86	15.7	58	17.1
기타	6	1.1	7	2.1
계	547	100.0	340	100.0

(3)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정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에 보낸 시간 외에 부부이외에 누군가가 자녀를 돌보아 줄 경우, 자녀를 돌보는 데 따로 사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녀양육에 드는 총 비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자녀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경우, 특히 자녀보호에 대한 다른 대체인력이 없는 맞벌이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자녀보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본 조사에서는 시설에 보내는 시간외에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용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3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만원 이하인 경우가 29.6%이고 41만원 이상의 비율도 1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비용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의 사례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돌봐주는 사례비에 대한 부담정도는 36.1%가 부담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표 10>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용의 규모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없음	34	31.5
1만원-20만원	32	29.6
21만원-40만원	26	24.1
41만원-60만원	16	14.8
계	108	100.0

<표 11>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례비의 부담 정도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부담이 안된다	39	36.1
보통이다/그저그렇다	43	39.8
부담이 된다	26	24.1
계	108	100.0

(4) 자녀보호노동의 성별분업

자녀양육의 몫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성불평등적 역할분담에 대한 현실은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의 <표 12>에서도 자녀보호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 여성의 노동이 남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보호노동 중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은 자녀의 ‘학교(유치원)통학 및 학부모회 참여’(74.3%)이었으며 역할분담이 가장 적은 영역은 ‘함께 놀아주기’(37.0%)로 이는 부부가 함께 하는 영역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녀의 양육이 부부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직도 대부분의 역할이 여성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가족내의 성불평등적 역할분담에 관한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가족내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표 12> 자녀보호와 양육에 대한 성별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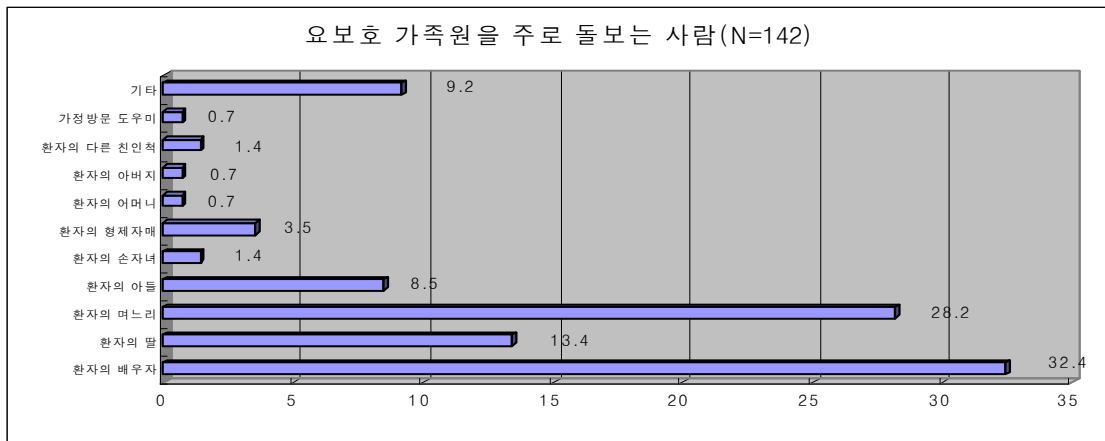
단위 : %, 명

특성	밥먹고 웃입혀주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때 돌보아주기	숙제나 공부봐주기	학교통학 및 학부모회 참여
아내가 주로	63.4	37.0	49.9	61.4	74.3
남편이 주로	10.7	25.8	15.9	17.6	5.8
부부가 함께	23.3	33.4	26.7	19.2	17.5
기타	2.6	3.8	1.2	1.8	2.4
계	100.0(500)	100.0(515)	100.0(540)	100.0(495)	100.0(480)

2) 요보호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

(1)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요보호 가족원을 간접적으로 보살핀다고 응답한 142명을 대상으로 그분을 주로 보살피는 사람과의 관계를 물어 본 결과, 환자의 배우자 32.4%, 환자의 며느리 28.2%, 환자의 딸 13.4% 환자의 아들 8.5% 환자의 형제자매 3.5% 등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일은 과출부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가족이 수발을 담당하고 있고 딸 19명(13.4%), 며느리 40명(28.2%), 어머니 1명 등 여성이 돌봄 노동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여성은 딸로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원을 보살피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요보호 가족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2) 요보호 가족원 수발에 따른 어려움

요보호 가족원을 수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34.7%)> 육체적 피로나 수면부족(28.4%)>가족 간 갈등(14.9%)>직장일 수행곤란(6.8%)>사회생활에의 제약(5.0%)>요양 및 치료시설에의 부족(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수발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성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체적 피로나 수면에 있어 남자는 24.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나 여성은 이보다 많은 31.4%가 응답하였고 가족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남자는 20.8%가 응답하였으나 여자는 9.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직장일 수행 곤란에 있어서는 남자는 5.0%가 여자는 8.3%가 응답을 하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원에 대한 직접적인 보살핌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직장생활에의 제약은 여성이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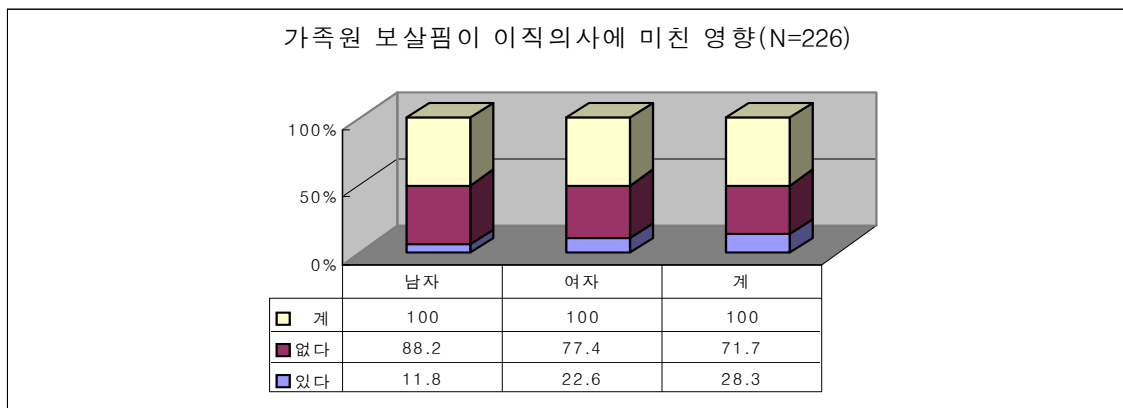
<표 10> 요보호 가족원의 수발에 따른 어려움

단위 : %

구분	전체(N=222)	남자(N=101)	여자(N=121)
경제적 부담	34.7	33.7	35.5
육체적 피로/수면부족	28.4	24.8	31.4
가족간 갈등	14.9	20.8	9.9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	1.8	.0	3.3
사회생활에의 제약	5.0	5.9	4.1
직장 일 수행 곤란	6.8	5.0	8.3
집안 공간의 부족	1.8	2.0	1.7
요양/치료시설의 부족	5.0	5.9	4.1
자녀교육 문제	1.8	2.0	1.7
계	100.0	100.0	100.0

(3) 가족원 보살핌이 이직의사에 미친 영향

요보호 가족원을 수발하는 일로 인하여 수입활동이나 취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그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 두려는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있다 28.3%, 없다 7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있다에 대하여 남자는 11.8%가 응답하였으나 여자는 이보다 약간 많은 22.6%가 응답하고 있어 가족원 수발에 따른 부담이 여성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가족원 보살핌이 이직의사에 미친 영향

(4) 보살핌을 위한 외부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요보호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226명에 대하여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기 위하여 집이 아닌 외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있다 28.3%, 없다 71.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없다고 응답한 161명을 대상으로 그러한 외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 39.8%, 필요를 못 느껴서 19.9%, 비용이 부담돼서 16.8%,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8.1%,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는 당연히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하는 데 이와 같이 지나친 가족원의 책임의식은 때로는 가족원의 부담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요보호 가족원을 실질적으

로 부양하고 있는 대상은 가족원 가운데에서도 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염려가 크다.

<표 11> 보살핌을 위한 외부시설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인근에 시설이 없어서	12	7.5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13	8.1
필요를 못 느껴서	32	19.9
서비스에 믿음이 안가서	4	2.5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	64	39.8
환자가 싫어할까봐	3	1.9
가족, 친척의 반대로	3	1.9
비용이 부담돼서	27	16.8
기타	3	1.9
계	161	100.0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증대하고 기혼여성들이 결혼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직장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직장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르는 문제점 및 상호영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1)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정도

본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종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수입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조사자 가운데 여성은 593명이었으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423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13.9%, 보통이다 24.1%, 어려움이 있다 6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61.9%의 직종을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는 직종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정규직에서의 활동보다는 비정규직, 임시직 등에서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이상의 수입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모두에게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서의 어려움을 묻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직종 가운데 기타와 서비스 및 판매직이 많은 것은 이들이 비정규직이면서 임시직으

로의 활동이 많고 그러한 여성들일수록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더 많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표 12> 직종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움

단위 : %

직종	없다	보통이다	있다	계(명)
관리직/전문가	7.7	38.5	53.8	100.0(13)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24.4	12.2	63.4	100.0(41)
사무직	11.1	27.8	61.1	100.0(18)
서비스/판매원	12.6	19.8	67.6	100.0(111)
농어업	12.0	31.5	56.5	100.0(184)
기타	17.9	12.5	69.6	100.0(56)
계	13.9	24.1	61.9	100.0(423)

(2)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

다음의 <표 13>은 현재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811명 전체에 대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은 자기만의 시간부족 24.9%,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20.0%, 자녀양육 및 육아병행에 따르는 어려움 19.4%, 가사부담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 31.3%,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22.1%등을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육아병행 25.8%, 가사부담 23.9%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역할인지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일 등은 여전히 아내와 주부의 몫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역시 주부에게 있다고 보는 의식이 높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취학이전의 자녀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집단에서는 자녀양육 및 육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가 학령기에 해당하는 40대 집단에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과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과 교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50대 이상에서는 자기만의 시간부족이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생활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생과업에 의해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가정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

단위 : %

특성	자녀 양육 /육아병행	가사 부담	부부공 유시간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자기만의 시간부족	기타	계(명)
전체	19.4	15.4	7.2	20.0	24.9	13.1	100.0(811)
성별							
남성	12.7	6.4	10.9	22.1	31.3	16.5	100.0(393)
여성	25.8	23.9	3.6	17.9	18.9	9.8	100.0(418)
연령							
20대	43.6	9.1	1.8	7.3	29.1	9.1	100.0(55)
30대	29.2	12.7	10.9	24.7	15.7	6.7	100.0(267)
40대	14.2	17.6	7.1	23.5	25.0	12.7	100.0(324)
50대	6.1	17.6	3.0	9.7	38.2	25.5	100.0(165)
교육수준							
중학이하	5.1	26.6	4.4	12.7	33.5	17.7	100.0(158)
고등학교	20.4	14.9	8.2	24.5	23.1	9.0	100.0(368)
대학이상	26.3	9.8	7.4	18.2	22.5	15.8	100.0(285)
가구구성							
부부가족	3.3	23.3	16.7	.0	43.3	13.3	100.0(30)
부부+자녀	19.8	15.2	7.2	20.8	24.3	12.6	100.0(682)
3세대/기타	22.2	14.1	4.0	20.2	23.2	16.2	100.0(99)
자녀구성							
자녀없음	3.1	21.9	15.6	.0	43.8	15.6	100.0(32)
초등학생이하	31.3	11.3	8.6	25.7	15.8	7.4	100.0(444)
중고생이상	5.4	20.3	4.5	14.3	35.2	20.3	100.0(33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5.0	11.4	9.1	13.6	27.3	13.6	100.0(44)
도시중간층	24.4	16.2	7.2	17.2	21.5	13.6	100.0(390)
농촌저소득층	9.9	20.3	5.7	21.9	28.1	14.1	100.0(192)
농촌중간층	17.8	9.7	8.1	25.4	28.1	10.8	100.0(185)
직종							
관리직/전문가	25.5	9.8	5.9	13.7	25.5	19.6	100.0(51)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30.6	12.6	5.4	12.6	22.5	16.2	100.0(111)
사무직	25.4	6.8	10.2	20.3	27.1	10.2	100.0(59)
서비스/판매원	24.9	19.3	7.7	18.8	20.4	8.8	100.0(181)
농어업	12.2	17.5	6.3	23.1	29.0	11.9	100.0(303)
기타	13.2	13.2	9.4	23.6	21.7	18.9	100.0(106)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부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기만의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구구성과 자녀구성별로 보면 자녀의 유무와 학령기와 비학령기에 따라 어려움을 다르게 거론하고 있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양육과 육아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학령기인 가정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시간부족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별계층구별에 따라서는 우선 지역간의 큰 차이로는 도시에서는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이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만의 시간부족을 어려움으로 알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에 있어서도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하게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른 계층구별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농촌저소득층의 경우, 가사부담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으나 관리직 및 전문가의 경우, 자녀양육과 육아병행으로 인한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한 점을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오늘날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할분담 및 권력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얼마나 담보해 나가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향후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더욱 증가되리라는 가정하에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갈등정도를 통해 알아보고 부부사이의 권력관계의 평등성은 재산소유여부와 가족내 의사결정 방식등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 가사노동과 성별 분업

성별분업이 엄격했던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가사노동은 공적 영역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된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불노동으로 고착되어 주로 여성들의 책임으로 규정됨이 일반적이다.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여전히 여성들의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가사노동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변화된 가족내에서의 가사노동 수행방식과 이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기혼여성들의 부담정도, 주5일제 실시이후의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성역할 분담정도의 변화 등을 통해 가사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하고자 했다.

(1) 부부간 역할분담 정도

① 남성의 경우

남성들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표 14>에서 제시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를 배우자(여성)가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부가 함께 하는 가사노동으로는 시장보기/쇼핑이 가장 많아 34.7%, 자녀돌보기 34.6%, 집안청소 20.7% 등의 순이었다. 한편, 남편 스스로가 하는 항목으로는 배우자(여성)에 비하여 훨씬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집안청소 7.3%와 세탁 6.5%, 설거지 6.0%, 자녀돌보기 6.0%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시장보기와 쇼핑이 4.2%로 가장 낮았다.

<표 14> 부부간 역할분담 정도

단위 : %

특성	주로 내가	부부 함께	주로 배우자	계(명)
식사준비				
남자	4.5	3.2	92.3	100.0(406)
여자	95.0	3.6	1.4	100.0(593)
전체	58.1	3.5	38.5	100.0(999)
설거지				
남자	6.0	9.0	85.0	100.0(406)
여자	90.2	8.3	1.6	100.0(593)
전체	55.8	8.6	35.6	100.0(999)
세탁				
남자	6.5	8.2	85.3	100.0(406)
여자	90.8	6.6	2.6	100.0(593)
전체	56.1	7.3	36.6	100.0(999)
시장보기/쇼핑				
남자	4.2	38.9	56.9	100.0(406)
여자	66.0	31.7	2.2	100.0(593)
전체	40.7	34.7	24.6	100.0(999)
집안청소				
남자	7.3	23.3	69.5	100.0(406)
여자	76.0	18.9	5.1	100.0(593)
전체	47.7	20.7	31.6	100.0(999)
자녀돌보기				
남자	6.0	41.0	53.0	100.0(406)
여자	65.1	30.1	4.8	100.0(593)
전체	40.9	34.6	24.5	100.0(999)

② 여성의 경우

여성들은 모든 가사노동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식사준비(95.0%)였고 가장 응답율이 낮은 것은 자녀돌보기(65.1%)였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일은 시장보기 및 쇼핑(34.7%)과 자녀돌보기(34.6%)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항목들에 대해 부부간에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기와 자녀돌보기와 같이 비교적 부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가사분담이 되고 있어 가사노동에 있어 남성들의 참여는 '성편중적' 경향(이기영, 김외숙, 2002)을 띄고 있으며,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여성중심형 과업'(female-typed tasks)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박재규, 2003).

(2)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련된 갈등여부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55.7%는 없다, 보통이다 19.8%, 갈등이 있다 24.5%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3.4%)에 비하여 여성(25.3%)이 가사노동에 대해 불만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로는 여성들(19.5%)이 남성들(14.9%)에 비해 갈등을 심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 없다'(3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취업여부별로 (남성의 미취업은 소수이므로 분석의 의미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여성만 비교해보면, 미취업여성(19.4%)보다는 취업여성(27.8%)이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더 많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지원이 없는 취업여성은 직장의 업무와 가정의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

스를 받는 것으로(김리진·윤종희, 2000; 전보윤, 1989) 나타나고 있는 데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가사분담으로 인한 부부 갈등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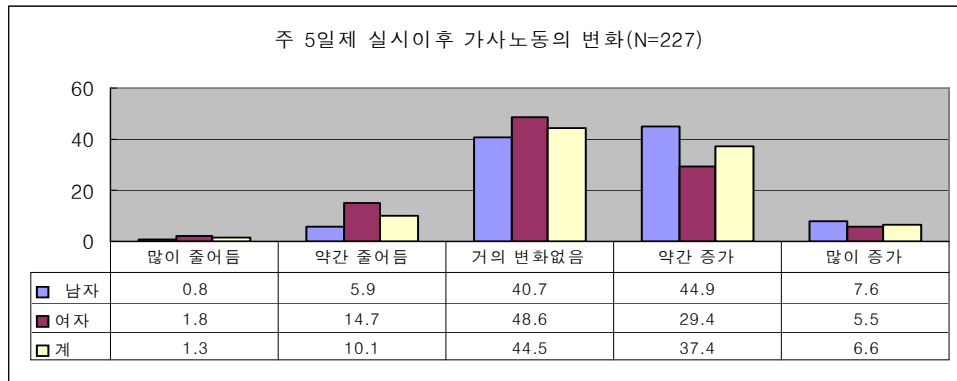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없다	보통	있다	계(명)
남성				
취업	58.3	18.8	23.0	100.0(400)
미취업/비취업	50.0	.0	50.0	100.0(6)
소계	58.1	18.5	23.4	100.0(406)
여성				
취업	48.1	24.2	27.8	100.0(418)
미취업/비취업	68.0	12.6	19.4	100.0(175)
소계	54.0	20.7	25.3	100.0(593)
전체				
취업	53.1	21.5	25.4	100.0(818)
미취업/비취업	67.4	12.2	20.4	100.0(181)
소계	55.7	19.8	24.5	100.0(999)

(3) 주 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의 변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취업남성들의 가정으로의 회귀를 유도하여 가족생활의 강화와 가사노동의 성 평등한 분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이후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 5일근무제의 도입이후 부부간의 가사분담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 발표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5일제가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징후는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여성부, 2003).

본 조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해당하는 227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후 가사노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결과, 주5일제 근무실시 이후 가사노동이 더 줄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하였으며, 거의 변화 없다 44.5%,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44.1%로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7%만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2.5%는 제도 실시 이후 더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여성은 16.5%가 줄었다고 응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의 경감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체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여성 응답자들은 거의 변화 없다 48.6%, 오히려 실시 이후 가사노동이 더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34.9%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5일제의 실시는 여성에 있어 가사노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여성들은 가사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 더 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주 5일제가 성 평등한 가사노동의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보이고 있다.



<그림 3> 주 5일제 실시이후 가사노동의 변화

2) 부부간 성 평등성

부부간 성 평등정도에 대해서는 부부권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가족내의 의사결정사안에 대한 결정방법, 재산소유의 불평등은 없는지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1) 가족내 의사결정

가족 내 의사결정에 대한 5가지 항목 가운데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문항 가운데 주거지역 결정 비율(75.5%)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투자 및 재산관리(54.1%)였다.

<표 16> 가족내 의사결정

단위 : %

특성	본인이 주로	배우자가 주로	부부공동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계(명)
자녀교육문제					
남성	13.0	27.0	58.5	1.5	100.0(406)
여성	36.3	7.6	54.7	1.4	100.0(593)
전체	26.8	15.5	56.2	1.4	100.0(999)
배우자 직장이동					
남성	15.2	21.9	60.7	2.2	100.0(406)
여성	5.1	36.8	55.6	2.5	100.0(593)
전체	9.1	30.8	57.7	2.4	100.0(999)
주거지역 결정					
남성	11.1	9.4	77.1	2.5	100.0(406)
여성	6.2	15.3	74.4	4.0	100.0(593)
전체	8.2	12.9	75.5	3.4	100.0(999)
투자 및 재산관리					
남성	23.9	14.8	59.6	1.7	100.0(406)
여성	15.9	31.4	50.3	2.5	100.0(593)
전체	19.1	24.6	54.1	2.2	100.0(999)
가족여가/여행장소					
남성	8.9	11.4	67.9	11.9	100.0(406)
여성	6.3	15.1	65.0	13.7	100.0(593)
전체	7.3	13.6	66.2	13.0	100.0(999)

한편 성별간의 차이를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주로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직장이동과 투자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내 의사결정사안에 대해서는 양성간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2) 재산소유여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있다 51.6%, 없다 48.4%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유무에 있어서는 성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남자는 75.9%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단지 34.9%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여성의 단 1/3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권한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조사결과 뿐만이 아니라 전국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다.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94.0%, 여성은 단지 58.5%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재산소유여부

단위 : %

특성	있다	없다	계(명)
전체	51.6	48.4	100.0(999)
성별			
남성	75.9	24.1	100.0(406)
여성	34.9	65.1	100.0(593)
연령			
20대	39.2	60.8	100.0(74)
30대	53.2	46.8	100.0(340)
40대	52.2	47.8	100.0(381)
50대	52.0	48.0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33.2	66.8	100.0(193)
고등학교	46.7	53.3	100.0(456)
대학이상	68.0	32.0	100.0(350)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29.2	70.8	100.0(72)
도시중간층	59.6	40.4	100.0(527)
농촌저소득층	36.0	64.0	100.0(197)
농촌중간층	53.7	46.3	100.0(203)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계층구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인 차이보다는 계층에 따른 재산소유 여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층에서의 여성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부부권력관계

부부평등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 평등하다라는 응답은 32.4%였으며 절반이상이 남편이 약간 우위 (56.4%)이거나 남편이 절대 우위(7.3%)라고 응답하고 있어 본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를 남성 우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시민 919명을 대상으로 물어 본 결과, 남편이 절대 우위라는 응답이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발전연구원, 2004).

<표 18> 부부권력관계

단위 : %

특성	평등	남편이 약간 우위	아내가 약간 우위	남편이 절대 우위	아내가 절대 우위	계(명)
전체	32.4	56.4	3.8	7.3	.1	100.0(999)
성별						
남성	37.2	52.2	4.2	6.2	.2	100.0(406)
여성	29.2	59.2	3.5	8.1	.0	100.0(593)
연령						
20대	50.0	40.5	9.5	.0	.0	100.0(74)
30대	37.4	54.4	3.2	4.7	.3	100.0(340)
40대	27.3	59.8	4.2	8.7	.0	100.0(381)
50대	27.5	58.8	2.0	11.8	.0	100.0(204)
교육수준						
중학이하	20.7	60.1	1.0	18.1	.0	100.0(193)
고등학교	29.6	61.8	3.3	5.3	.0	100.0(456)
대학이상	42.6	47.1	6.0	4.0	.3	100.0(350)
가구구성						
부부가족	73.5	23.5	2.9	.0	.0	100.0(34)
부부+자녀	31.6	57.3	3.9	7.1	.1	100.0(851)
3세대/기타	26.3	58.8	3.5	11.4	.0	100.0(114)
자녀구성						
자녀없음	70.3	27.0	2.7	.0	.0	100.0(37)
초등학생이하	37.1	55.0	4.2	3.5	.2	100.0(547)
중고생이상	22.9	60.7	3.4	13.0	.0	100.0(415)
지역별 계층구별						
도시저소득층	36.1	48.6	6.9	8.3	.0	100.0(72)
도시중간층	33.8	53.3	5.7	7.0	.2	100.0(527)
농촌저소득층	26.4	62.9	1.0	9.6	.0	100.0(197)
농촌중간층	33.5	60.6	.5	5.4	.0	100.0(203)
결혼기간						
10년 미만	46.1	44.6	4.7	4.3	.4	100.0(258)
10년-19년	31.0	60.4	3.2	5.4	.0	100.0(407)
20년-29년	22.2	62.7	5.2	9.9	.0	100.0(252)
30년 이상	28.0	53.7	.0	18.3	.0	100.0(82)
취업상태						
취업	31.3	57.5	3.7	7.5	.1	100.0(786)
미취업/비취업	37.6	51.4	4.4	6.6	.0	100.0(168)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해 평등하다라는 인식이 37.2%로 여성의 29.2%보다 높았으며 남편이 약간 우위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남자는 52.2%에 불과하나 여성은 이보다 좀 높은 59.2%의 응답율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불평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부부관계가 더 평등한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은 20대 집단에서 평등한 관계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30대 집단에서는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37.4%였으며 연령이 많은 5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이 11.8%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학력수준이 낮은 중학이하의 집단에서는 평등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두 배정도 낮았으며 남편이 절대우위라는 응답이 18.1%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수준과 부부평등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및 자녀구성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부가족에게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거나 어릴수록 부부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 계층구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 간 격차보다는 같은 농촌 안에서도 저소득층의 평등관계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보다는 미(비)취업 집단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로 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IV. 가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모색

1. 본 조사결과의 함의

1) 전라북도 가족구조 변화추이 및 특성

가족형태에 있어 전북은 핵가족의 비율은 낮고 1세대 부부가족, 3세대가족,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취업이나 취학으로 부모와 떨어져 노부모가구, 형제자매가구로 사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음을 의미 한다.

실업과 고용불안, 만혼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가 감소하는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전북은 농촌지역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의 증가로 인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혼인율의 감소, 조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런 경향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이주여성과 그들 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의 가족정책은 독거노인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돌봄노동의 실태

본 조사결과를 통해 자녀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등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주책임자는 주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둘러싼 역할갈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나 부담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인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원을 돌보는 노동이 여전히 가족과 여성에 의해 수행되거나 이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가 높아 돌봄노동을 둘러싼 ‘가족과 노동’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가족의존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주담당자로서 여성의 노후가 배우자나 기타 가족원, 사회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때 여성의 빈곤화가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3)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직장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은 응답자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직장과 가정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 남녀간의 격차가 심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아동의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어 남성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점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라는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견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성평등의 자율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 내부안에서도 연령과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직종에 따라 어려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지원책은 대상자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제의 적극적인 사용과 같은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 사용을 권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직종별로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 본 바,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농업의 경우 자녀양육에 이어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중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안일과 양육부담에 대한 가사노동이 사회화되도록 지원해야하며 양육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체제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활동이 요구된다.

4)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여성의 세력화 및 노동시장 참여증대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제도가 개선되고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남녀관계가 중심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본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로는 세대간, 계층간의 차이

가 다소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안에 따라 양성평등적이거나 혹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재산소유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은 다소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남자가 평등한 부부관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남녀 간의 의식과리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여성의 변화를 남성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부부간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의사결정 등은 젊은 세대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및 가족문화는 더욱 확대되리라고 보여진다.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실현이 가족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첫걸음은 부부간의 양성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2.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돌봄노동의 지원강화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정책은 ‘아동수당’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아동수당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출산을 경제적 이유와 직접 결부 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은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물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에 의해 전적으로 보호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 후 아동보호를 제도화하고 사회화 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에 대한 가족원의 돌봄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지역에서의 대응 전략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인 효사상과 가족 책임주의로 인해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의식의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홍보도 필요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확한 실태 및 수요 파악,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보호, 돌봄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노동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돌봄의 욕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에 대한 돌봄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확대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취업여성들이 돌봄노동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간호휴가제의 적극적인 실시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인 근무시간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2) 직장과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가하고, 남성 역시 과도한 생계책임을 혼자서 짓는 홀벌이 보다는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은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경제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고려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때 동시에 남녀 모두 직장과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모성보호 확충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확대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의 확대 및 급여지급의 상향조정, 가족 돌봄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간호휴가제에 대한 장려를 통해 남녀 모두 가족내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사업계획을 통해 남성의 자녀돌봄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맞벌이 부모의 자녀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더 많은 정책을 통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역할분담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3) 성 평등적 부부교육의 확대

가족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하여 가족의 기능성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 주기에 부합되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참여·가족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및 확산 보급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하여 남녀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제도권 안에서는 많이 진보하였으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불평등이나 성차별은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의 증대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내의 양육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여전히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담이 지워져 있는 게 현실이다. 가족의 부양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역할부담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며, 특히 가사와 양육의 분담에 대한 양성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내 권력구조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민주적 가족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및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가부장적 의식과 성 편견이 강고하지만 양성평등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여성의 경험을 상상할 있는 성인지적 상상력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경우, 양성평등한 부부관계나 민주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과 학습 및 훈련의 기회가 제약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직장근무로 인한 물리적·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찾아다니며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동식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가족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하여 가족을 둘러싼 제반 체계

와의 관계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토대로 가족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와 인구의 노령화가 가져온 가족보호기능의 약화는 이제 어느 특정집단의 가족만이 아닌 보편적인 가족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가족문제를 책임졌던 가족책임주의의 극복과 복지부담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가족관련 제반 체계와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정책적 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정책의 대상이 과거 문제가족이나 요보호 중심의 잔여적 복지형태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몇 가지 가족정책의 수립기준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가족 관점과 성인지 관점의 결합으로 여성친화적 가족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가족과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안정성 강화에 정책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성천 외(2000),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한국 가족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월호.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화순 외(2000a),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4), 『가족정책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백경희·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규(2003),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2003), 『2003년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인천발전연구원(2004), 『인천시민의 가족실태 및 가족가치관 조사』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 방향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이 성 희(우석대학교 교수, 우석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I.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쟁점

가족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 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족문제를 등장시키게 되고, 가족기능 등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가족정책의 쟁점으로 부각되어진다. 특히 가족변화의 핵심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결과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과 직,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지표들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가족 내 양육 및 부양(돌봄) 기능의 공백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져왔고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시장 진출의 증가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관점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가족의 주요한 기능인 양육과 돌봄은 여성만의 혹은 가족만의 주요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둘째, 이혼을 비롯한 여성한부모(모자)가족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가구주는 지난 20년간 뚜렷한 증가를 보이면서 이중에서도 사별,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무배우율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이혼의 증가 등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여성이 가구주로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자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주로 결혼 중 일어나는 생애사건으로 가구주가 되고 생계와 자녀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경제적 곤궁함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모자가족에 대한 임시방편적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의 긴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변화는 가부장적 이념과 성별분업 바탕의 '정상 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을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급격한 출산을 감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친화적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의 현상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들(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심리적 혜택감소, 자녀로 인한 기회비용과 직접비용 증가, 경제여건 악화,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증대, 양성평등한 사회규범의 미비 등)에서 기인되고 있는데 자녀와 여성과 관련한 변화원인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많은 가정들과 여성들이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고비용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보육비와 교육비, 여성이 일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포함하는데 모든 소득계층에서 양육과 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이 밝혀지면서 출산수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은 양성평등적 사고와 직업능력개발을 중시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시장이나 가족은 이들의 변화된 태도나 가치관을 수용할 만큼 준비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임금 대비 낮은 여성임금의 노동지위, 가사 및 양육 부담으로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등을 경험함으로써 변화된 여성역할과 요구는 가부장적인 사회규범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혼연기나 출산연기, 무자녀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수행한 25세에서 40세까지의 1,00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저출산의 우선순위정책으로 아동양육의 공공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성의 생애주기에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노동 불평등해소 정책을 들었다. 이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저출산 정책은 ‘자녀의 수’만큼 ‘자녀의 질’을 강조하여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보호 및 사회적 책임과 함께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저출산의 정책은 아동복지와 여성, 그리고 가족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정서적 유대의 약화는 가족의 다양성 인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에서의 성별분업은 가족에서 여성은 주부인 동시에 어머니이며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 남성은 임금벌이자로 공적 영역에 위치시켰다. 이러한 성별분업구조에 따라 사적영역은 공적영역에 비해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가족유지의 중요한 축으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일’로 간주되지 않아 왔다. 이에 여성의 역할과 일은 남성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평가도 있고 이는 다시 평가에 따른 보상,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와 통제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성별분업은 다양한 가족유형의 등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실업으로 인한 가구경제의 불안정성,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평생직업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남성 부양자 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유형과 규범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차적인 가사·양육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생계부양자 역할의 공유자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전통적 성별분업 하에서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수행해 왔던 가사와 양육노동의 재분배 문제는 가족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공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II.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1.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1) 보편성

요보호가족 중심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2) 평등성

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지원

3) 사회성

개별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4) 통합성

단편적, 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 조정기능 강화

2.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2006년)

1) 새로운 가족문화조성

□ 가족의 가치 및 인식 재정립

- 세대와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족가치관, 규범 정립
- 호주제 폐지 이후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 정착 홍보 등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 유아기부터 정서적 유대와 관계 중시하는 가족개념 교육 실시 등

□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

- 가족주기,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 부부교육, 부모교육,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
-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확대
: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 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심층치료 연계

2)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유대강화지원
: 핵가족·확대가족·부부가족·1인가구, 입양가족 등
-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 가족을 위한 임시휴식 제공
: 부양자 휴가서비스 지원 등 가족휴식지원시스템 구축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 양육모를 위한 그룹홈 설치 확대
- 이혼시 양육비 산정 및 확보 방안 마련

□ 소외가족 지원 확대

- 가정폭력에 처한 위기가족 쉼터 확대 및 심층 서비스 연계
: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 가족동반쉼터 등
- 국제결혼가족, 새터민가족, 외국인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지원

3)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
: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휴가제도 도입 및 운영 촉진
- 가족친화기업 발굴 확산 및 지원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포상
: 정부와 기업간 ‘가족을 위한 협정’ 체결로 기업의 참여유도

□ 가족생활 환경조성

- 가족단위 학습·문화공간 확대 및 여가문화 확산
: 가족단위 놀이·레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등
- 가족유해광고 등 가족유해환경 감시활동 활성화
-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가제] 제정 추진
: 가족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기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실시 근거, 가족친화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4)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 가족돌봄의 사회분담확대

-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검토
- 가정봉사원 양성 및 지원
 - :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설 및 가정에 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지원

- 아버지휴가제도 도입 검토
 - :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
- 좋은 아버지상 발굴·홍보, 양육과 부양의 부부역할 공유 확산

□가족-지역 공동체 활성화

- 가족단위 품앗이·자원봉사 활성화
 - : 돌봄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체계 마련
-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 : 호혜적 상부상조체계(서로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물물교환)

5)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06-'10) 수립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 내실화
 - :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설치
 - : Family call(가족전화) 운영 : 가족관련 서비스 제공 연계
- 중앙건강가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구성·운영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등 개정 보완
- 가족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 가족실태조사 실시

III. 건강가정지원법의 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심각한 가정위기와 기존정책이 가지는 대상자별, 소득계층별 사후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한 가정문제 발생 예방 및 가정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4. 2.9 제정, 2005.1.1 시행)

-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 의무 규정
- 건강가정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
- 건강가정 주요시책 심의를 위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 건강가정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건강가정기본 5개년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
- 가족생활실태 및 서비스욕구 파악을 위한 ‘전국가족실태조사’ 실시
- 건강가정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가정사 배치활용

2.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1) 사업목적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2)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제35조

3)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4) 종사자 기준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근종사자 최소 4인 이상

- 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센터 종사자는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시도	센터장		시도 및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이상 공무원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자
시군구 센터	전담 인력	팀장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1년이상 실무자
		팀원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족관련: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과목과 연계된 학문을 의미

*가족관련사업: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5)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기능

- 지역주민 대상의 가정문제 상담 및 교육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가족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지역사회 가족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사업
-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6) 국고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기준

- 센터운영예산(시도/ 시군구); 국비 50%, 지방비 50%

7) 주요 사업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명시된 조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2006년도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공통사업]

- 부부교육
 -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가족생활 적응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운영
- 부모교육

-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혼 전,후 가족상담
 -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혼 후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또는 가족관련 법률지식 제공, 상담, 자조모임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 가족단위의 새로운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지원
-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 행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가정의 달 행사수행
- 한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
 - 한부모 가족을 단위로 교육, 상담, 문화활동(가족캠프 등), 자조모임 형성 등 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예기치 않은 잔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아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육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 지도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시도(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군대를 선정하여 운영

IV.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의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전 주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건강가정법을 제정한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용산구(숙명여대 건강생활연구소 위탁운영), 충청,호남권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직영),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가 시범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이 수행하였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인력은 주로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진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시범기간동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육팀 사업으로 우리가족 건강한가, 내 아이 마음읽기, 알콩달콩 노부모와 함께 하기, 부부성격차이 극복하기, 행복면허 취득하기, 부자되세요 등 특강 및 집단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둘째, 가정상담팀 사업으로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면접 상담’ 등이 있었다.

셋째, 가정문화팀 사업으로 ‘가정봉사단 활동, 가족 박물관 여행과 레크리에이션, 추석음식 만들기, 어르신을 위한 건강 댄스, 전통혼례문화 체험하기’ 등이 있었다.

2005년 사업 내용은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생활교육 가정생활문화, 건강가정 형성·유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분야에는 개별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집단상담(부부대화법), 자조그룹 운영이 있다.

가정생활교육에는 부부성격 차이 극복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알콩달콩 노부모와 함께 살기, 행복면허 취득하기, 웰빙시대 우리 가족 재테크 전략, 우리가족 건강지키기 등이 있다.

가정생활문화 분야에는 가정의 날 행사,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정 보내기, 어르신을 위한 건강댄스, 가족봉사활동, 저소득층 가족 대상 혼례 행사, 가족사랑 걷기대회 및 가족사랑 캠페인이 있다.

건강가정 형성·유지 차원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연주민 의식조사, 건강가정지원 등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주로 부부 성격 차이 극복,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 노부모와 잘살기, 재테크 등이 있었다.

2) 인천시 길산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소속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인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센터 사업을 가족복지사업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기존 복지관 자원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정도의 사업 내용을 보여 준다.

즉 가족 대상 긴급지원 사업은 복지관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하는 반면, 가족 문제 예방 및 가족 생활 관련 문화 사업은 복지관 소속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는 식의 업무 분담을 하고 있다.

가족 문제 예방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분야인데, 교육 내용은 ‘우리 아이 행복 만들기’, ‘좋은 부모되기’, ‘함께 가는 인생(부부)’, ‘더불어 사는 세상’ 등이 있다. 가족 문제 상담은 전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화 상담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대상자를 오게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었다.

3)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 분야는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문화 관련 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가족상담 분야는 부부·가족 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진단 상담 등이 있다.

상담은 전화 상담이나 면접 상담, 그리고 사이버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족생활교육 내용은 결혼준비 교육,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육, 노년기 준비 교육, 이혼상담 전문가 워크숍, 한부모 가족캠프, 부부대화법, 이혼 후 적응 교육, 부부감성 훈련, 남성을 위한 가족생활향상 프로그램 등이다.

건강가정문화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체험교실, 가정의 날 행사, 어린이 경제 교육, 추석맞이 가족단위 송편 만들기, 외국인 가족 우리 전통문화 체험하기 등의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16개소(표2참조)로 늘어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었다.

(1)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가정생활주기별, 가정생활영역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예시) 결혼준비교육(예비부부교육), 부부교육, 초등학교 부모교육, 중고등학생 부모교육, 노년기 교육, 재테크, 웰빙식생활교육 등.

(2)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의 문제예방과 가정의 위기관리를 위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의 실시

(3)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운동의 전개 및 홍보

가족여가문화체험, 가족영화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체험, 가족단위자원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4)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정지원 서비스, 방과후 학습도우미 지원서비스, 보육도우미지원 서비스 등의 실시.

(5) 가정관련 정보, 자료제공 및 전문가 양성교육

인터넷을 통한 가정생활과 관련된 자료 제공,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상담사례 세미나 개최, 건강가정사 양성 현장실습 등의 실시

2.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성격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니고 있는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06.1 현재>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소연월일
중앙	서대문구 합동SK리첵블 804호	02-3147-2194	05.3.4
용산구	용산구 청과2가 53-12 숙명여대 본관 104호	02-2077-7165	04.6.28
송파구	송파구 장지동 45 (사)새세대육영회	02-443-3844	05.6.29
관악구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02-883-9890	05.7.20
강북구	강북구 번2동 318번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02-987-2567	05.8.1
동대문구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내	02-957-0760	05.9.5
동작구	동작구 사당3동 324-14호 유창빌딩 304호	02-599-3301	05.9.6
서초구	서초구 양재동 25-3 서초구민회관 2층	02-576-2852	05.8.31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갈산2동 360 갈산종합사회복지관	032-515-8187	05.3.29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59-7 종합복지회관	031-590-8211	05.7.8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한미오피스텔 2층	031-501-0033	05.7.20
천안시	천안시 안서도 115 천안대학교 진리관 110호	041-620-9768	05.4.7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쉼터관 422	053-580-6815	05.4.14
여주시	여주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내	061-690-7158	04.6.10
부산시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87-3 부산역사내 1층	051-463-4938	05.5.1
김해시	김해시 외동 1261-3 김해보건복지센터 254호	055-329-6355	04.6.17

(2) 예방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문화사업 등은 가족문제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통합적 가족기능 지원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강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육지원, 취업지원, 보호기능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서 거점 기능 수행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서비스를 조정하는 포괄적 중심기능을 수행 한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가족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 기능이 종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안

현재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가정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두 분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필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있어왔다. 따라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와 학문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족학자들은 가족의 강점(family strengths)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이며, 가족원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가족원의 안녕(well-being)에 기여하는 가정이라고 합의하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 가족연구가 가족문제의 발견과 문제의 원인에 중점을 두었던 데 비하여 1970년대부터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많은 가족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건강가족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토대가 되어 건강가정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부 가족학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학문적 근거가 되는 ‘건강가족’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2)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의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및 방향이 저소득 가정을 소외시키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이 있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요보호 대상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적 가족정책의 부재 혹은 요보호 가족에 국한된 가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여성가족부가 가족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대상이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해 온 저소득 요보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 요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업무의 하나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중복해서 수행된다면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일 것이다. 또한 일반서민 가정들도 개별가정이 해결하기 힘든 가정문제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음이 인정하는 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들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수 회 진행하면서 그들이 가진 강점을 빠른 시간 안에 되살릴 수 있었던 경험에서도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지원사업의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3) 지역사회 유사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전국 약 270개의 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에 따른 효과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구심체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가족관련 상담소 및 시민단체의 가족지원서비스 체계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구하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기관과 가족의 욕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가족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가족정책 지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양성평등적 관점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성별, 가족형태별 평등성 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은 프로그램 제목만에서만, 혹은 가정학이라는 학문성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가정학 분야에서 가정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치료, 문화사업을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대다수 학자, 실무자들은 가정학 분야 중 대부분 가족학 전공자들로서 상당한 양성평등적 관점과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부분에 대한 더 세밀한 관찰과 참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본다.

그리고 남성의 참여가 높지 않는 점, 한 부모가정, 소외된 가정의 구성원의 접근성이 높지 못한 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향후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 점이라 하겠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내 가족관련 기관, 기업, 학교와 연계하며 다양한 교육매체와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간, 장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생활교육과 상담에 관한 권장규정이 정해지고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5) 전략적 차원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질은 바로 예산과 연결될 수 있다. 예산의 부족에 대한 보완책으로라도 전략적 차원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수준이나 인적, 물적자원, 네트워크 단위나 규모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공통필수사업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할 만한 재정적, 인적 여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이 일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가족관련 사업이나 서비스를 백화점 진열 방식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특정분야의 지속화 및 전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가족원에게 적합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율권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력 확대 및 다분야간 연계성의 문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면, 2005년 현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센터장과 대외협력실장 각1명, 그리고 총무지원팀, 건강가정프로그램개발팀, 정보제공/문화운동팀, 인력개발관리/지원평가팀 등에 근무하는 팀장 및 팀원, 그리고 사무원 등 총8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팀, 상담팀, 문화홍보팀 등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중심으로 각 팀장 1인, 팀원 1인으로 실무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을 해본 실무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적구성은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대외협력 및 홍보팀, 가족지원서비스 팀의 5분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팀의 팀원은 적어도 2인 이상으로 인력확대가 이루어 질 때 명실공히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적절

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분야간 연계성의 문제는 원칙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외협력 및 홍보팀은 가족학 전공자보다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인력이 한 전공에서 50%를 넘지 말아야 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인력구성비율을 생각해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일 것이다. 이는 현재 대학에서 점차 전공학과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며 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수교과목의 강화라든가 일정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V. 외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태에서의 시사점

1. 독일 사례

독일의 가족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부담 보상정책에서 가족기여 보상정책으로의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즉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갖는 부담만을 보상해 준다는 정책 기조에서, 가족이 갖는 가사·양육·보호 노동, 2세대 생산·사회화 기능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정책 기조로 변화한 것이다. 즉 가족정책 기조가 가족에 대한 시혜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갖는 권리의 의미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기능 유지를 위해 권리로써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과 이혼 증가 등으로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 기조가 가족이 갖는 소위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에 대해 사회가 보상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점이라고 보겠다.

둘째, 1990년대 말까지도 가족 형태 다양화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연방정부 태도가 바뀌면서 **결혼·비결혼 부모 가족, 독신부모가족, 의붓·입양·보호가족, 다국적 가족과 외국인 가족 역시 가족정책의 주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우리 현실에서 가족정책 대상으로서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데 좋은 선례를 준다고 보겠다.

셋째, 가족정책 기조에서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갖는 부담 경감에서 가족이 갖는 부담을 파트너가 분담함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하여 가사노동이나 아동 양육에서 남성의 참여가 저조하다 볼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은 이제 서서히 사회적 규범이 되는 단초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모공동휴직, ‘3세-8세’ 아

동을 위한 공동 부모휴직 1년, 부모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호, 아동양육시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노동 보장, 새로운 취업환경을 위한 캠페인, 다양한 아동보호시설 제공 등을 통해 **가족 부담 분담에서 부모의 역할, 더 정확히 말하면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넷째, **가족정책 기조에서 아동이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점이다.** 아동은 일단 그 사회에 태어난 이상 부모가 갖는 소득,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다른 아동들이 누리는 평균 수준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개념이 가족정책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아동정책, 노인정책, 인구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가족정책 간 관계 속에서 모든 아동이 동등한 양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추구한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대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가족정책 기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 형태, 가족이 갖는 경제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아동 보육의 질이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면서도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활 조건 조성을 위한 가족정책 도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아동 권리를 강조하는 독일 가족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가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대상 시설서비스와 연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시설 이용은 일일 이용시설과(부분) 수용시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갖는 문제가 더 이상 부모와의 상호 작용 가운데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장애아동 양육 부담이 가족 해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시설 수용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원조법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이 갖는 문제를 시설 이용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이나 보호로 인해 생기는 가족 부담을 육구의 개별화 원칙과 시설을 통해 분산한다는 접근법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 부담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서비스 이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독일 가족정책은 보육노동을 근거로 한 연금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보육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1년 개정된 **보육수당·부모시간 제도는 보육이 취업 활동과 같은 힘든 노동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육 주체를 더 이상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로 확대**하였다. 아동보육이나 가사노동 등 가족 부담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보고 이를 경감하려고 하는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보겠다. 즉 가족부담 경감에서 남성의 참여가 없이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가족정책적 시도를 다양화하게하기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즉 가족 부담 경감을 여성의 문제로 초점을 맞춘 정책은 결국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한 정책을 시도한 국가에서는 남성의 가사·양육·보호노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 기초를 처음부터 남녀가 함께 가족부담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성별노동분리 극복을 위한 비전을 가족정책을 통해 제시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전제될 때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가족연대 구성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 여성가족부는 지역가족연대 조직 원리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활동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 실천하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독일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려는 한국 사회의 최근 동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종 조직이나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여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는 가족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 미국 사례

미국은 개별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의 기능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의 책임 강조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부모가족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이혼 방지를 가족정책의 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시장을 통한 돌봄문제의 해결이라는 미국 가중정책의 기본틀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재정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첫째, 가족 내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을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가족지원서비스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빈곤, 부부간 갈등, 이혼가족의 양산, 가출 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가족지원정책에 있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며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여 그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가족을 강화하게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을 가족유지 기본축의 핵심에 놓고 가족지원서비스를 배치하는 미국의 접근방식은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성을 정착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혼상담서비스에 있어서도 이혼 자체의 상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혼 전후의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양육비 보장을 통한 아동의 경제적 생활안정 보장 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의 가족지원서비스가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즉 **가족지원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제공되**

는 곳은 학교로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복지를 접근하는 관점이 뚜렷하게 반영된다.

둘째, 가족지원서비스가 사후적 개입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미국 가족지원서비스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조와 같이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는 가족관련 정보 제공이나 심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의뢰 서비스(96%)와 부모교육(84%)이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자녀활동지원서비스(73%), 아동발달관련지원서비스(70%), 지지집단 또는 멘토링서비스(66%)도 대다수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 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뒤 개입되는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직접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정보와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배치하는 미국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적합한 전달체계가 다양한 유형으로 정착하는 방식**도 미국의 사례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우리의 경우 가족지원센터가 반드시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 및 물적 자원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네트워크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단체 및 재단을 통한 기금의 확충과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유기적 협력방식에 의해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이나 재단 등을 통한 재정 운영자금의 확대와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미국 지역사회서비스 내용(가족지원서비스 범주별 내용과 구체적 프로그램)*

순위	범주별 내용(%)	프로그램
1	정보와 의뢰(96)	아동발달/부모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과 배포, 기관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2	① 부모교육(84)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이혼 전/후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
3	부모/자녀관련 활동서비스(73)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이민자가족 교육프로그램
4	아동발달 관련 서비스(70)	아동(청소년) 인성증진 프로그램
5	지지집단/멘토링 서비스(66)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
6	아동학대 예방(48)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대처프로그램
7	공동체 활동지원 서비스(43)	부모 자조그룹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8	프로그램 참여지원 아동보호 서비스(38)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 보육프로그램, 주간보호프로그램
9	건강보호서비스(37)	성인가족간호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노인건강프로그램
10	긴급지원 서비스(37)	긴급생계지원, 가정폭력생존자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복수 응답임

<참고문헌>

- 김혜경(2005) 한국 가족정책의 쟁점과 정책방향.
 2006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 자료
 2006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의 추진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2005)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연구
 대한가정학회(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전략

□ 토론 1 □

이 혜 숙(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2 □

김 미 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두드림 팀장)

1. 가족내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해야

조경옥 발제문 자료에 의하면 만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실태를 보면 부모가 돌보고 있는 비율이 20002년 60%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진출과 소득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육이 가족의 돌봄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요보호가족을 돌보는 사람도 역시 여성, 딸-며느리-어머니 순으로 가족의 돌봄기능에 대한 부담을 현실에서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돌봄노동이 남성에게도 주어져야 된다는 보고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맞물려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가치의 강조보다는 가족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돌봄노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여성적인 능력과 특성을 개별 가족내의 노력과 헌신에 묶어 두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의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조한혜정, 2005) 2010년에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확장되서 돌봄의 영역을 사회화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를 양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을 돌봄노동영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탈가족화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거론되고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2.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여성이 언제나 부모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사회, 여성에게 ‘일’과 ‘자녀’ 혹은 ‘가족’중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 가족정책, 아동복지정책, 노동시장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일과 가족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돌봄노동이 사회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부장제 의식의 온존 속에서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성역할의 분리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고, 이는 주요 정책에서 여성배제와 경력 단절 등을 매개로 하여 노동시장과 경제적 성취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열등적 지위로 나타나게 된다. 여성의 노동권이 확보되고 고용평등이 보장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지망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최근 가족관련 논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만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이 적지 않다. 사회복지체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인구관련정책이 우선 시급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현재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근친강간, 폭력, 빈곤으로 인한 청소년 가출의 문제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인 가족, ‘따뜻하고 정서적 교류가 있는’ 이상적 의미의 가족은 찾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수행할 수 없었던 부문에 대한 것-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체계-행정기관, 경찰, 민간단체-확보하여야 한다. 그동안 가족일탈적인 문제는 여성단체나 여성관련상담소에서만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각 동단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언적의미로 강조된 바, 세부적이고 파악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가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것이다라는 아이디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4. 가족, 가족의 지원, 문제등이 현단계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가족’의 개념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 공유와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현실의 실체를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봤을 때, 현실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고 치열하며 문제적이기 까지 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현실속에서 변화하고 실재하는 가족에 대해서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5. 성평등한 관점의 정책 수립을 앞당기는 시점으로 삼아야

출산의 영역은 아직까지 여성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돌봄의 영역에 여성만 위치지워지는 것에 문제 제기했었고, 가족이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진출한 후의 경험을 단절케하는 주 요인으로 파악하여, 지금의 현상은 가족화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승리라고도 본다.

지금 이 여성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가족과 관련된 논의,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필요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 아동복지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성평등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으로 성별분업의 약화에 기여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막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방향에 대한 토론

고 희 숙(원광대 사회복지학 강사, 군산성폭력상담실)

가족정책의 기원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프랑스와 스웨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가족에 관한 인구학적·경제적 문제, 특히 출산율저하와 저임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또는 가족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이 다른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조흥식 외,2006)

가족에 대한 기대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안식의 제공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족은 한 개인이나 사회처럼 환경과 역동적인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계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있어온 이혼율의 증가,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독신가구 증가, 출산율 하락, 동성애 가족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이미 우리 사회 현실문제로 다가왔다.

본 논문은 우선먼저, 가족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관련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통합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건강가정지원법의 시행초기단계에서 건강가정 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토론자는 발제자의 논지를 공유하면서 덧붙여 건강가정지원법과 논문에 있어 몇 가지 토론되어야 할 점과 제안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건강가정지원법이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가 아닌 탈 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일부분에서는 두리 뭉실한 법조항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정책들이 명시되지 않았다.

2.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성보다는 일부 출신학과에 국한하여 언급된 점.

3. '제20조 가족실태조사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되어있는데 5년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가족생활주기에 비추어 보거나 현재의 가족변화가 급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가족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에서 이혼 전 상담부분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 가족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5.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세 번째 쟁점과 저 출산 정책은 아동복지와 여성, 그리고 가족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

특히 이는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을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1980년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용이한 사회, 즉 양육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보고²⁾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후속정책으로 예를 들어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그간 회자되어왔던 출산과 양육에서 헛수나 기간에 따른 가산점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 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으로 입양되어지는 우리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려책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6.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서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기능에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가족욕구를 반영한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은 적합하다고 보여 지지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가족생활문화운동 전개는 기본법 15조 2항의 2번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반한다고 본다.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의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의 문제에서 그동안 전반적인 가족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을 맡아왔던 사회복지기관과는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의 차별성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선도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특화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치료적 차원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족정책의 행정체계가 독일과 같이 가족관련 총괄 전담부서

2) 채구묵,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가 있어 김성천·윤혜미가 주장하는 종합가족복지센터로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조흥식외(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이원숙(2005), 가족복지론, 학지사

채구묵(2005), 가족복지 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방향

-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

홍 달아기 (원광대학교 교수)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가정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고 있기에 2004년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올 들어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 발표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급속한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족형태와 기능, 가치관의 변화이다. 한 나라의 가족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적 이념과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념은 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생활단위란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어떠한 변화든 우리의 가족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발표된 원고에서 가족이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있다는 것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하는가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부분과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가족변화의 지표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여 설명되고 있어서 가족변화와 정책이 또는 건강가정의 여부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해 좌우되는 듯한 주장으로 들릴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공감을 하지만 '사회변동과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족이 사회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틀림없으며 가족안정을 위해 사회변동에 적응해야 함은 중요하다. 즉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역기능과 순기능적인 면이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원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각기 다른 세대원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은 여성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끌어질 수 없으며 가족간 조화를 위해서도 타 가족원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수립방향을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법에 대한 근거제시가 좀더 구체적으로 되었다라면 발표자가 소개한 건강가정사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았으리라고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1년 가정학계에서 발의한 ‘가정복지기본법(안)’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공청회와 여러 학계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규정을 확실히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건강가정을 위해 노력하고자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사회적 의의는 ‘가정문제의 사후적 개별적 접근에서 사전적·통합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의 기본방향은 첫째, 가정기능의 강화, 둘째, 가정의 잠재력 개발, 셋째,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넷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육구충족, 다섯째,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통해 건강가정사업과 이를 위한 가족정책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적은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차별성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사실 사업의 범위를 보면 너무 광범위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다분야간의 연계성과 유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운영자 운영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센터의 인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규정에 의하면 상근종사자 최소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6명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하는 것도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4.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홍보와 건강가정에 대한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문이나 가족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일을 하며,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육구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인적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차질을 극소화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자료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